## 18. 제규정 관리규정

제정일 : 2007년 10 월 17 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시행되는 규정류의 제정, 개정,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 ① "규정류"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반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.
  - ② "학칙"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대학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.
  - ③ "규정"이라 함은 정관과 학칙에 준거하여 학교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그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.
  - ④ "세칙"이라 함은 학칙 또는 규정이 위임한 사항 및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.
  - ⑤ "내규"라 함은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또는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.

제3조(종류 및 서열) ① 규정류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.

- 1. 학칙
- 2. 규정
- 3. 세칙
- 4. 내규
- ② 규정류의 서열은 제1항의 배열순위에 따르며 상위의 규정은 그 하위에 있는 규정에 우선한다. 하위 규정이 상위규정에 정한 내용에 반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4조(형식과 내용) ① 규정류에는 다음의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.

- 1. 총칙 : 목적, 적용범위, 기타의 통칙
- 2. 본칙 : 제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적, 구체적 조항
- 3. 부칙 : 시행일, 효력기간, 경과조치 등
- ② 규정류에는 다음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여야 한다.
- 2. 항목은 장, 절, 조, 항 및 호로 구분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.
- 3.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다.
- 4. 보기, 별표 및 서식은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5. 조문에는 조문 내용을 간략히 표시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6.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조문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1. 항의 표시 : ① ② ③
- 2. 호의 표시 : 1. 2. 3.
- 3. 목의 표시 : 가. 나. 다.

- **제5조(규정류의 입안)** ① 규정류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입안할 수 있다.
  - ② 당해 부서에서 입안된 규정안은 사무처에 규정심의제안서(별지서식 1호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정안이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 야 한다.
  - ③ 사무처는 제출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및 효율성과 상위규정에의 저촉,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.
  - ④ 사무처는 입안된 규정안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, 학칙을 제외한 제 규정류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 제6조(규정류 제정 및 개·폐) ① 학칙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, 학칙을 제외한 제 규정류의 제정·개정 및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써 시행한다.
- ②사립학교법이 정한 다음 각호의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다.
- 1. 직제에 관한 규정
- 2. 인사에 관한 규정
- 3. 보수에 관한 규정
- 4. 복무에 관한 규정
- 5.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
- 6.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
- 7. 제규정 관리규정
- ③ 위②항의 규정을 제외한 제반 규정류는 교무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제6조의 2(의견청취) 교무위원회는 규정(안)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
- 제7조(시행 및 효력) ① 모든 규정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 - ② 규정류의 제정 및 개정일은 규정류의 상단 우측에 계속적으로 표시한다.
  - ③ 규정 중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조항의 말미에 일자를 표시한다.
- **제8조(규정류의 관리)** 규정류는 사무처에 그 원본을 보존하며 사무처는 시행일자를 명기한 규정류 사본을 각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규정류의 정리 및 비치)** 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정류를 그때마다 규정집에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정 및 개·폐된 규정은 규정대장(별지서식 2호)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법령 등의 우선) 법령, 정관 및 학칙에 위반하는 규정류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제11조(유권해석) 규정류의 해석은 사무처에서 주관하되 법인 사무처의 자문을 얻어 소관

부서와의 합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 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규정 심의 제안서

1.규정명:											
2.재정(개폐)사유:											
3.주요 내용(제정,개정):											
첨부:규정(제정,개정)안) 1부											
	년	월	일								
			부서명	인							
사무처장 귀하											

그 되네지										
규정대장										
일련	규정	업무소관	규정명	개폐주요내용	결재	시행	비고			
번호	번호	부서	7100	게페구표대이	일자	일자	0175			